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Sharp Electronics, 휴대 퍼스널컴퓨터 판매시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대하여 보상 제공

동사는 Mobilon 구매자에게 원도우즈CE의 최신판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전자기기의 세계최대 제조판매업자의 하나인 Sharp Electronics사(Sharp)는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하고 금일 발표한 동의심결안의 조건에 따라 휴대 개인용 컴퓨터(Handheld Personal Computers: HPCs) Mobilon의 특종기종 소유자에 대하여 동 제품의 마이크로소프트 원도우즈CE 운용체계(Operating System)의 최신판으로의 업그레이드에 관하여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하여 동 소유자에게 저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줄 것에 동의하였다. 위원회의 사실인정에서는 Sharp는 본 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 것을 이전에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구매자들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는 생

각을 갖게 하는 광고를 계속하였다고 하였다. 화해안에 의해 1999년 및 2000년도의 일정기간에 Mobilon 4100, 4500, 또는 4600을 구입한 소비자는 10달러의 배송료만을 부담하고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된다. Sharp는 또한 앞으로 허위의 업그레이드 광고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는데도 가능한 것으로 제품을 선전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위원회가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의 실례를 주의 깊게 조사하여 그 결과 Sharp가 약간의 비용부담으로 소비자에게 확약한 업그레이드판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Jodie Bernstein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말했다.

위원회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1999년 및 2000년의 수개월간 뉴저지주 Mbhwah에 소재하고 미국내에서 1997년에 3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Sharp는 동 사의 Mobilon HPCs 가 마이크로소프트 원도우즈 CE운용체계의 후속판이 발매된 때에 동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허위 광고하였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많은 HPCs는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및 데이터베이스 등 몇 가지의 운영프로그램(applications)을 포함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FTC는 Sharp가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판을 고객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Mobilon HPCs의 구매자에게 원도우즈CE의 후속판이 발매했을 때에 업그레이드 할 기회를 신고 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후 수개월간 Sharp는 이 Mobilon HPCs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광고를 계속하였다고 위원회는 언급하고 있다.

동의심결안의 조건에 따라 Sharp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Sharp는 일체의 업그레이드 제품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허위광고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Sharp는 Mobilon HPC Models 4100, 4500, 또는 4600을 구입하고 업그레이드를 약속 받았던 소비자들에 대하여 10달러의 배송료 부담만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받았다. 소비자는 Sharp로부터 우송 받은 업그레이드 클레임용지를 제출하던가 또는 인터넷상에서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기회에 관한 소비자에 대한 고지는 Sharp의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마지막으로 Sharp는 보고의무를 포함, 동의심결안의 조건을 동 사가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

라야 한다. 심결안에서 명기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조건항목은 20년 후에 실효한다.

Public Comment에 부칠 동의심결안을 승인하는 위원회의 투표는 5-0이었다. 동의심결안의 요약은 자체없이 연방관보에 발표된다. Comment는 2001년 2월 26일까지 30일간 제출되어지고 이후 위원회는 동의심결안을 최종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Comment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송부될 것이다.

2001. 1. 25. FTC 발표

Hart-Scott-Rodino법의 합병 사전신고조건의 주요한 변경, 2001년 2월 1일에 발효

신고기준은 5,00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수수료는 거래규모에 따라 다르도록 하였다.

2001년 2월 1일, 합병·매수를 행하려고 하는 특정사업자들은 거래실시전에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DOJ)에 대해 신고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1976년 Hart-Scott-Rodino

(HSR)반트러스트 수정법(Antitrust Improvements Act : 15 U.S.C. 18a)의 신고조건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 발효된다. 이러한 변경 내용 중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합병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합병·매수의 기준이 현행 1,500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기업들은

1억 달러 미만의 합병·매수에 대해서는 45,000달러, 1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의 합병·매수에 대하여는 125,000달러, 5억 달러 이상의 합병·매수에 대해서는 280,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단계화된 새로운 수수료제도도 실시된다.

HSR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규모의 취득자 및 피취득자는 합병·매수의 사전신고를 행하기 위하여 FTC 및 DOJ에 신고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국은 제안된 합병·매수가 반경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리고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에 위반하는 합병·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집행활동을 위하여 이 정보를 사용한다. 신고당사자는 HSR법상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감시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신고한 합병·매수를 완성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었으면 HSR 신고조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의 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법무부 독점금지국장과 공동으로 이 합병사전신고규칙 및 신고양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규칙 변경에 관련하여 Second Request에 대한 내부적인 불복신청 절차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이 절차규칙을 수정하였다. 합병사전신고규칙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인터넷·웹사이트상의 Antitrust/competition (Premerger/Hart-Scott-Rodino Act) 섹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합병사전신고규칙 및 신고양식 및 절차

규칙의 변경은 2개의 연방관보고시에 발표되며, 2001년 2월 1일에 발효한다. 위원회는 또한 연방관보의 발표 후 45일간 HSR법 개정안을 Public Comment에 부치기 위한 추가적 연방관보고시 발표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고시의 발표를 승인할 위원회의 투표는 5-0이었다. 고시는 자체 없이 연방관보에 발표된다. Comment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송부될 것이다.

2001. 1. 25, FTC 발표

미 법원, 경매회사 반트러스트 화해안 승인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가격고정 담합에 의해 사기당했다고 주장한 고객들이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5억 1,200만 달러 규모의 화해안에 대하여 22일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당해 승인에 두 가지 조건을 첨부하기는 하였지만, 맨해튼 주재 연방지방법원의 Lewis A. Kaplan 판사는 44페이지짜리 결정문에서 당해 화해안을 “어떠한 기준으로든 확실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인 Richard Drubel은 “우리는 Kaplan 판사의 의견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가 부기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하였다. 당해 화해안이 승인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경우가 흔치 않은 예술 경매계를 1년 이상이나

흔돈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이번 민사소송은 크리스티의 전 최고경영자가 두 회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수수료 및 기타 항목의 요율을 고정하기로 담합하였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문서들을 제공하면서 가열되었던 법무부의 4년에 걸친 반트러스트 형사조사가 발단이 되었다. 검찰은 형사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민사사건의 변호사들은 연방판사가 부기한 조건은 3월 1일까지 충족될 것이며 법원에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에 13만명 이상의 경매회사 고객들에게 화해금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직원들은 당해 승인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였다.

Kaplan 판사가 5억 1,200만 달러 규모의 화해안에 부기한 조건 중 하나는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경매에서 물건을 매매한 고객들도 “비록 소액일지라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대로라면 당해 소송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었다. Kaplan 판사의 두 번째 조건은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5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지불의 일부로서 판매자들에게 발행할 할인 증서의 존재를 공표하라는 것이었다. 증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Kaplan 판사는 이 증서에 관한 공지가 경매 목록 및 판매자의 송장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당해 화해안에 따르면 경매회사들은 각각 2억 5,600만 달러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난 9월,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판매가능하나 장래의 계약분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 증서의 형태로 5,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Kaplan 판사는 이러한 증서가 액면 가치에 상당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 이었다. 지난 달 Kaplan 판사가 명령한 경제적 분석 결과, 그리고 주도적 원고측 변호사들인 Boies, Schiller & Flexner 소속의 David Boies 및 Drubel의 압력에 따라, 경매회사들은 해당 증서의 가액을 1억 2,500만 달러까지 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집단소송의 참가자들은 500달러 이상의 청구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발행될 이러한 증서를 4년 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또한 합의했다.

Kaplan 판사가 지난 11월에 당해 화해안을 예비적으로 승인하였을 때, 이들 경매회사는 30일 내에 조건부 계좌에 현금으로 1억 달러를 예치하도록 되었었다. Kaplan 판사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30일 이내에 이 계좌에서 자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고객들이 돈을 만지게 될지는 불확실한데, 추정에 따르면 누군가 당해 승인에 대해 항고할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Kaplan 판사는 또한 Boies 법률회사에 대한 2,670만 달러의 지불을 승인하였는데, 이 금액의 20%는 할인 증서로 지불될 것이다. 최저 수임료를 제시하고 화해금의 대부분을 집단소송 당사자들에게 지불하게 될 변호사들을 지정하기 위하여 Kaplan 판사가 실시한 예외적인 입찰절차에서 이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들이 주도적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당해 결정문에서 Kaplan 판사는 만

일 입찰절차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은 “수억 달러를 덜 받게”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단지 916명, 즉 1% 미만의 집단소송 참가자들이 화해안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으며 단지 61명만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Kaplan 판사는 기록하였다.

소더비와 전 최고경영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크리스티가 조건부 사면을 받은 이번 사건의 형사적 국면은 연방 검찰이 소더비의 최대주주이자 전 회장인 A. Alfred Taubman에 초점을 두고 계속 조사를 진행중이다. Taubman은 위법事實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까지도 뉴욕의 소더비 직원들을 조사하였으며, Taubman의 변호사들과 반트러스트 검사들간에 워싱턴 D.C.에서 협상이 진행중이다.

2001. 2. 23,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델타항공 – 에어프랑스 화물운송 합작투자사업 인가

미국 법무부는 6일, 델타항공이 에어프랑스와의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를 공동으로 마케팅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경쟁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이 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련기업들에 송부된 서신에서,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들 항공사의 국제 항공화물 운송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작년 5월에 당해 공동 마케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두 기업으로부터의 조회에 대한 회답으로서, 법무부는 아마도 당해 협정이 가격 내지 서비스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 산하의 법률가들은 당해 협정이 “이들 두 회원사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산출량을 줄이거나 혁신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미국과 유럽 노선에서 델타항공은 40편, 그리고 에어프랑스는 18~20편의 여객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프랑스의 경우에는 2~3편의 화물편도 매일 운항하고 있다고 에어프랑스의 한 임원은 1월에 밝힌바 있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절반씩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기업은 이러한 합작투자사업으로 인해 비용의 감소, 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며 국제 화물운송 시장에서 더욱 경쟁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다른 대소 경쟁업체들로부터의 상당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001. 3. 6, The New York Times

아메리칸 항공의 TWA 인수 제안, 반트러스트 인가 얻어

경영부진 상태에 있는 Trans

World Airlines Inc.(TWA)를 7억 4,200만 달러로 매입하여 파산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아메리칸 항공의 계획이 16일 미국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의 인기를 얻음으로써 이 계획은 주요 장애물을 넘었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짤막한 성명을 통해 “TWA의 파산상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심사를 행한 후” 동 국은 아메리칸 항공의 모회사인 AMR Corp.에 의한 당해 취득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메리칸 항공은 TWA 노조와의 근로협정을 마무리지은 이후에 4월까지 당해 기업결합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기업결합은 미국 항공운수산업의 통합에 관한 또 하나의 조치이다. 규제당국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모회사인 UAL Corp.가 US Airways Group Inc.의 대부분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인가할 것인지를 아직 고려중이다. 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그 일부로서 아메리칸 항공은 US Airways의 지분 20%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거래가 완료되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합쳐서 미국 항공여행 시장의 약 절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TWA의 위험한 재정상태를 언급하면서, 반트러스트 관리들은 기업 임원들이 행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미국 반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파탄기업의 운영을 보존하는 취득에 특별한 고려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양 항공사의 대표들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TWA의 대변인인 Chris Kelly는 16일 “이는 중요한 전향적 조치이며, 이

로써 우리는 이번 거래를 마무리짓기 를 열망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16일, TWA는 델라웨어 주 Wilmington에 소재한 파산법원에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 신청이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아메리칸 항공에의 동 항공사 매각을 마무리짓기 위한 필수조건인 동 항공사의 근로계약의 수정이 허용될 것이다. 이 기업결합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TWA는 아직까지 조종사와 기계공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칸 항공은 기존의 아메리칸 항공의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TWA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해 신청은 예비적 조치로 제출되었다. TWA는 소속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신청은 철회될 것이다”라고 Kelly는 말하였다.

TWA의 기계공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계공노동조합 대변인은 동 노동조합은 아메리칸 항공이 문서로 고용보장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조종사노조의 TWA 지부 대변인인 Keith O'Leary는 동 노동조합이 TWA의 아메리칸 항공에의 매각을 지지하며 법무부의 인가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2001. 3. 17, Los Angeles Times

E U

유럽위원회, BMI-루프트한자-SAS 합작투자 사업 인가할 듯

유럽위원회는 다음 달 BMI British Midland가 루프트한자 및 SAS 스칸디나비아 항공과 함께 하는 유럽 합작 투자사업에 대해, 이들 항공사가 런던 히드로 공항-프랑크푸르트 노선에 대한 양보에 합의하였으므로, 다음 달에 예비인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항공사는 모두 스타 항공사 제휴의 회원사들인데, 현재 히드로 공항과 프랑크푸르트를 왕복하는 노선에 대해 현재 취항중인 영국항공이나 새롭게 진입하는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루 4편의 취항을 위한 공항시설 이용을 포기하기로 제안하였다.

이들 3자간의 합의는 히드로 공항 및 맨체스터를 출발하여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독일에 이르는 약 20개 노선에서의 공동 마케팅, 가격책정 및 수입 공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해 합작 투자사업은 또한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여 브뤼셀, 마드리드, 밀라노 및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들까지 운항하는 BMI의 다른 18개 노선 및 영국 국내 운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3자간의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반트러스트 적용제외 허용은 3개 항공사가 작년에 BMI가 스타 제휴에 참여하면서 추진해 온 협정에 대한 인가를

의미한다. 유럽 경쟁규칙에 따르면 이들 3개 항공사가 합작투자사업으로서 노선을 운영하는 데 대해 유럽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이는 인가된 것이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들 3개 항공사에 대하여 당해 협정을 인가할 계획이지만 일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식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위원회는 3월 하순 전에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일의 기간을 두어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논평을 권유하게 된다. 이후 동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자동적으로 6년 동안 인가된 것이 되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인기는 단일 유럽 항공운수시장의 역학관계의 단계적 변화를 시사하게 될 것이다. 1996년 아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반도간 노선에 관한 SAS와의 양자간 제휴에 대해 반트러스트 적용제외를 허용해 왔던 루프트한자는 이와 유사한 협력협정을 다른 유럽 국가 항공사들과도 체결하고자 하고 있다.

작년에 접수된 BMI의 반트러스트 적용제외 신청과 더불어 루프트한자와 SAS는 오스트리아항공과의 유사한 협정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인기를 신청하였다.

영국항공은 Oneworld 제휴의 유럽지역 협력업체인 Iberia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의 결정을 앞두고 BMI-SAS-루프트한자의 반트러스트 적용제외 신청의 경과를 주시하여

왔다. 영국항공은 또한 다른 Oneworld 제휴 회원업체인 판란드항공 및 아일랜드의 Aer Lingus와의 협정에 대해서도 유럽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001. 2. 26, Financial Times

EU, GE-허니웰 기업결합 조사

유럽위원회는 General Electric (GE)이 405억 달러로 허니웰 사를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당해 기업결합 인가에 대한 결정은 최장 4개월까지 늦춰지게 되었다. GE는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실망하였지만 허니웰 취득이 궁극적으로는 인가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우리는 양사의 사업부문이 보충적이며 우려할 만한 중첩부분은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이 결합된 기업이 광범한 분야의 항공기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라고 GE는 26일 오후 늦게 성명을 통해 밝혔다.

GE 회장인 잭 웰치는 EU 반트러스트 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와 브뤼셀에서 26일 회합하였는데, 원래는 늦어도 4월까지 규제당국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고 당해 기업결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러한 시간표는 이제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

일본

는 이 절차가 4개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Fairfield에 소재한 GE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몬티 위원은 27일, EU는 GE-하니웰 기업결합 조사를 연장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주말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잭 월치 회장에게 제2단계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의향을 알렸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몬티 위원은 EU가 “제안된 기업결합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우려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회피하였다.

GE는 발전소 부품, 항공기 엔진, 전기기구 등을 생산하고 NBC 텔레비전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는 다각화된 기업이다. 하니웰은 항공우주 시스템, 발전, 운송 및 공장자동화 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특수화합물, 플라스틱, 섬유 및 기타 산업용 자재도 생산하고 있다. 일부 사업영역에서의 중첩은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들 사이에 반트러스트 우려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들 규제당국은 결합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부문 중 일부의 매각을 기업결합 인가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유럽위원회는 GE-하니웰 기업결합에 대한 결정을 3월 6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EU 반트러스트 인가 시스템에 따르면, 기업들은 1개월간의 조사를 받으며 이후에 유럽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조건부이든 무조건으로든 인가하거나 4개월간의 추가적인 조사를 개시 할 수 있다.

2001. 2. 27, The New York Times

4명의 일본기업 임원들, 가격카르텔 공모로 기소

- 우에노제약(Ueno Fine Chemicals Industry Ltd)은 1,100만 달러(약 12억 8,000만 엔)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 -

우에노제약의 3명의 임원 및 일본의 대형화학회사인 다이셀화학공업의 1명의 사원이 식품의 방부제산업에서 17년 동안 국제적 가격카르텔 공모에 참가하였다 하여 금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기소되었다고 법무부가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의 화학제품제조업자인 우에노제약은 동 공모에 있어 이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의 답변을 하고 1,1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공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주었다. 약 2억 달러에 상당하는 소르빈산염(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을 포함)이 매년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르빈산염은 주로 치즈 등의 유제품, 비스킷(과자)류, 기타의 가공식품과 같이 수분과 당분을 많이 포함한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방부제이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서 대법원은 우에노제약의 이사인 코마즈 유거, 동 사 화학제품 총괄 책임자인 카쓰야마 요시히코, 동 사 화학제품의 판매부장인 시노다와 가오,

다이셀화학 유기합성품사업부의 영업사원인 히야시 히도시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과 기타의 지역에서 판매된 소르빈산염의 가격을 고정하고 판매량을 할당함으로서 경쟁을 억압할 목적으로 기타의 사업자 및 개인 공모자와 모의를 도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명의 임원들은 모두 일본국민이다.

동시에 일본의 오사카에 소재하는 우에노제약이 소르빈산염의 가격카르텔 및 판매수량 할당 공모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하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소되었다. 유죄답변의 합의는 동 지방법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이 합의의 일부분으로 우에노제약은 개인피고의 기소에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다.

우에노제약은 Eastman Chemical 사, Hoechst 사, 일본합성 및 다이셀에 이어 소르빈산염 공모에 참가하였다 하여 기소된 5번째 회사이다. 우에노제약에 대한 1,100만 달러의 벌금부과로 이 사건심사에서 부과된 벌금은 합계 1억 3,00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본 건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고 및 공모자의 죄상은 아래와 같다.

- 소르빈산염 가격을 협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상호 인상할 것에 합의하였다.
- 주요한 소르빈산염 제조업자간에 각 사가 판매할 소르빈산염의 양을 할당할 것에 합의하였다.
- 협정에 따라 가격을 공표하고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 협정한 가격과 판매량을 감시하고 준수시키기 위하여 회합에 참가하였다.

더욱 정식기소에서는 특히 4명의 임

원들과 공모자가 미국내 및 유럽공동체 회원국가의 국내에서 회합을 갖는 것을 피하고 가격의 공표순서·공표시간에 시차를 둘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 카르텔의 회합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결정함으로서 카르텔 행위를 숨기려고 기도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우에노제약 및 4명의 개인 피고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동조는 기업에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 개인에게는 최고 3년간의 금고형과 35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 양자에 대한 벌금의 최고액은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2배액이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의 최고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금일의 기소는 독점금지국 샌프란시스코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FBI에 의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이다. 본 건은 원래 행위의 내용으로부터 형사사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법무부로 이관되어진 것이다.

2001. 1. 23,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주형·금형의 제조에 사용되는 등방성흑연 일본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와 일본인 임원은 금일, 미국 및 기타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등방성흑연에 대한 국제적 가격카르텔에 공모하였다고 유죄의 답변을 하고 합계 4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일본기업의 임원이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받는 것에 동의한 최초의 사건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주 지방법원에 금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도요 탄소주식회사의 자회사이며 오레곤주 Troutdale에 소재하는 Toyo Tanso USA 및 일본 국민이며 거주자인 다케시 다가기씨는 1993년 7월부터 적어도 1998년 2월까지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의 등방성흑연산업에 있어 경쟁을 억제하고 배제하기 위하여 공모자(의명)와 음모를 기도하였다.

Toyo Tanso USA는 4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였다. 다가기는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1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였다. Toyo Tanso USA 및 다가기 양자는 법무부가 진행중인 심사에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다.

등방성흑연은 내열·내약품성에 뛰어난 미립자 탄소제품이다. 이것은 다른 제품중에서도 특히 방전가공용전극, 금속의 연속가공을 위한 금형 및 이의 독특한 특성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금일의 제소는 미국산업계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에 관계한 기업 및 개인을 탐지하고 기소하는 독점금지국의 결의를 더 한층 증명

하는 것이다.」라고 John M. Nannes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말했다.

Toyo Tanso USA 및 다가기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의해 가격카르텔 공모를 행한 것으로 제소되었다.

-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된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의 등방성흑연 가격 및 등급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회담에 참가하였다.
 - 가격을 협정한 수준으로 할 것, 동수준까지 가격을 인상하고 유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판매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에 관하여 협정한 가격으로부터 할인을 행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의 등방성흑연에 대한 등급을 표준화 할 것에 합의하였다.
 -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의 등방성흑연의 등급을 표준화하는데 합의하였다.
 - 협정사항을 감시하고 준수시키기 위하여 판매 및 고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협정에 따라 가격을 공표하고 견적서를 냈다.
- 2000년 3월 Carbon of America Industries Corp.(CAIC) 및 동 사의 사장이면서 CEO(최고경영책임자)인 Michel Conigilio는 같은 공모에 참가하였다하여 제소되었다. 양자 모두 유죄답변을 하였다. 공모에 따른 이들의 역할에 대하여 CAIC는 715만 달러, Conigilio는 1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양자는 모

일본제조업자의 임원과 미국 자회사, 국제적 가격카르텔공모에 관하여 유죄답변

-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일본기업 임원이 금고형에 동의한 최초의 사건임 -

두 법무부가 진행중인 조사에 협력하였다.

Toyo Tanso USA 및 다가기는 서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동 법은 기업에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 개인에게는 최고 3년간의 금고형과 35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 양자에 대한 벌금최고액은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2배액이 법률에서 정한 벌금의 최고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금일 기소는 독점금지국 필라델피아 사무소 및 필라델피아에 소재하는 FBI에 의해 진행중인 조사결과이다.

2001. 2. 14,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자동차 검사용 기기 입찰에서 담합 – 공취위, 4개사 현장조사

공정취인위원회는 22일, 국토교통성의 지방운수국이 발주하는 자동차 검사용 기기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낫산 아르티아 등 도쿄 내 4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 혐의로 현장조사하였다. 현장조사를 받은 대상은 낫산 아르티아 외에 이야사카, 반자이, 안전지 도샤(安全自動車) 각 회사의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약 40여개소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전국의 지방운수국이 발주하는 브레이크 테스트기, 스피드건 테스트기 등 5개

종류의 자동차 검사용 기기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담합을 반복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발주의 자동차 검사용 기기는 이들 4개사가 독점하고 있다. 담합으로 낙찰된 기기는 전국 93개소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에 납품된 상태이다. 작년도의 발주총액은 약 14억 엔이었다.

현장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들 4개사는 「내용을 알지 못해 논평할 수 없다」, 「담합은 없었다고 믿고 있다」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001. 2. 23, 요미우리신문

사실이나 논평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1. 3. 4, 아사히신문

공취위, 「관제담합」사건에서 2개사의 심판개시 결정

홋카이도가 발주한 농업토목사업을 둘러싸고 「관제담합」을 하였다 하여 도내업체 252개사가 총액 약 14억 엔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9일까지 명령에 불복한 2개사에 대하여 심판의 개시를 결정하였다. 심판을 받은 업체는 하시바(橋場)건설과 곤도구미(近藤組)로서, 과징금액은 각각 1,361만 엔과 1,210만 엔이다. 제1회 심판은 4월 23일에 개최된다.

공취위에 따르면, 2개사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대상으로 인정된 수주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작업내용으로 보아 농업토목공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대해 하시바 건설은 「담합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나, 과징금의 산정에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고 있다.

2001. 3. 10, 아사히신문

수입식물 구제 관련, 4개사 카르텔 혐의 – 공취위 조사

나리타공항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부착된 해충을 구제하는 업무를 둘러싸고, 소도회사 및 창고회사 등이 가격카르텔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다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3일까지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 혐의로 4개사의 사무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취위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는 간토쿤조(關東燻蒸), 간토코교(關東港業), 고쿠사이구코 우와야(國際空港上屋) 등이다.

4개사의 담당자들은 나리타공항에서의 훈증처리업무를 둘러싸고, 회합에 의해 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4개사 중 간토쿤조는 「현장조사를 받은 것은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Enel, 통신 회사 취득 위해 추가로 자산매각해야

이탈리아의 경쟁당국은 복합 공공설비 회사인 Enel이 통신회사인 Infrastrada를 취득하는데 대해 5.5기가와트의 발전설비 매각을 포함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반트러스트당국이 부과한 이 조건과 기타 조건들은 영국 기업인 보다폰과의 110억 달러 규모의 당해 계약을 수포로 만들 수도 있다. 규제당국은 Enel이 이탈리아 전력 자유화법에 따른 요건인 15기가와트 용량의 3개 발전회사 매각을 완료한 뒤 90일 내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매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새로운 자산매각은 Enel의 발전회사들의 매각 이후 90일 이내에, 또는 2002년 후반기에, 전력 매입업체의 기준을 0.1기가와트/시 수요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정부 제안과 일치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제안에 관한 표결은 3월 첫째 주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

반트러스트 당국이 발전설비를 추가로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논거는 동 기업의 신규부문으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전력산업에서의 동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Enel의 발전부문에서는 그러한 용량의 발전설비 매각은 동 기업에 2.5-

3조 리라(12억 9,100만~15억 4,900만 유로화)의 연간수입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계산되었다. 이탈리아법은 어느 기업도 50% 이상의 발전 내지 전력수입을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분야의 규제당국('Autorita per l'energia elettrica e il gas, 전력 및 가스 당국)은 Enel이 현재 이탈리아의 수력발전자원의 70%를, 그리고 이탈리아의 평균전기료를 산정하는 중간정도 효율의 발전소인 화력발전용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에너지 규제당국에 따르면 2002년에 Enel은 전기료를 산정하는 발전용량의 98%를 차지하였다가 2005년에는 80%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Enel의 이탈리아 전력수입용량 관련 시장지배상태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2000년에 동 기업은 수입용량의 100%를 차지하였는데, 에너지 규제당국은 이 수치가 2003~2005년에 94%로 떨어졌다가, 예정된 2개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및 신규 파이프라인 설비가 건설되는 2005~2010년에는 단지 53%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Enel의 전력시장 지배상태가 이탈리아 전력부문에서의 공정경쟁의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에너지 규제당국의 자문위원인 Oliviero Bernadini는 지난 2월 아테네에서 열린 가스 및 전력산업 회의에서 말한바 있다.

반트러스트 당국의 엄격한 조건에 직면하여, Enel은 행정법원에 반트러스트 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제기와, 당해 계약 취소, 그리고 보다폰에 대하

여 Infostrada의 매각가격을 낮춰 주도록 설득하는 방안 중에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결정은 3월 5일부터 시작하는 주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1. 3. 5, Financial Times

캐나다

캐나다 산업성, 일본기업 가격카르텔에서 유죄 답변

캐나다 산업성 경쟁국은 금일, 일본 기업인 도가이 카본사가 캐나다에서 경쟁업자들과 국제적 공모를 하는데 방조하였다는 유죄 답변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도가이 카본사는 벤쿠버의 연방법원 사실심리부에 기소되었고 25만 달러(약 2,000만 엔)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1992년부터 최소한 1997년 6월까지 행해진 이 국제카르텔 참가자는 흑연전극의 가격을 구속하고 세계시장을 분할할 것에 합의하였다. 도가이 카본사는 협정에 따라 캐나다 국내제조업자인 UCAR 및 SGL캐나다사의 시장인 캐나다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 공모를 지원함으로써 Tokai Carbon사는 가격카르텔협정이 캐나다에서 성공하는데 조력하였다. 본 건 공모의 결과로 캐나다에서 흑연전극의 가격이 6

년 동안 90%이상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공모자는 비록 캐나다에서 얻고 있는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의 소비자 및 경제계를 기만하는 계획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경쟁국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의한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Johanne D'Auray 경쟁·형사사건담당차장은 말했다.

도가이 카본사는 캐나다에서 본 건 공모에 관하여 유죄의 답변을 행한 세 번째 회사이다. 캐나다에 본거지를 둔 UCAR 및 독일에 본거지를 둔 SGL Carbon Aktiengesellschaft사는 흑연전극 카르텔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관하여 이미 유죄의 답변을 행하였다. 카본 및 전극산업에 대한 경쟁국의 심사는 계속 행해질 것이다.

흑연전극은 주로 arc식(호형) 전기로 내에서의 철강제조(모든 소규모의 제련소에서 쓰여지고 있는 제강기술) 및 ladle식(구형) 전기로에 의한 철강의 제련에 쓰여지고 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 사본은 경쟁국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의 증명사본은 재판기록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2001. 2. 5, 캐나다산업성경쟁국 발표

캐나다 경쟁당국, 에어캐나다 제소

캐나다 반트러스트 당국이 에어캐나다가 2개 경쟁업체를 상대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제소함으로써 캐나다 항공운수부문에서의 에어캐나다의 시장지배적지위가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캐나다 경쟁국은 반트러스트 문제에 대해 판결하는 특수법원인 경쟁법원에 대하여 에어캐나다가 동부 캐나다 지역에서 비용이하로 운임을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에어캐나다의 가격설정 변경으로 인하여 CanJet과 WestJet과 같은 저가운임의 항공사들은 압박을 받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경쟁국은 밝혔다. “동 국은 에어캐나다의 가격설정과 수송능력 관리로 인해 WestJet과 CanJet이 이들 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쟁국은 이들의 퇴출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인상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동 국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항공운수산업의 재구축이 현재 진행중인바, 동 국은 신규진입업체가 경쟁할 때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각오이다”라고 캐나다의 경쟁담당위원인 Konrad von Finckenstein은 말하였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캐나다의 최대 항공사로서 국내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에어캐나다는 경쟁국의 기소내용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 것”이

라고 하였다. “CanJet과 WestJet의 확장계획 발표와 이들의 재정적 건전도를 기초로 할 때, 에어캐나다의 가격 설정 및 운송능력 관리의 영향에 대하여 동 위원이 진술한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에어캐나다의 기업개발 및 전략 부문 집행부사장인 Calin Rovinescu는 성명을 통해 말하였다.

에어캐나다는 캐나다 항공운수산업에 관한 가격설정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쟁법원에 대하여 신속심리 개최를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경쟁국은 에어캐나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피가능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동부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키고자 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동 국의 회피가능비용의 해석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당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회피될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국내·외에서 경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특히 이는 현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우리는 캐나다 내의 주요 노선에 관한 경쟁업체들의 가격설정 주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Rovinescu 부사장은 말하였다. 경쟁국은 캐나다 경쟁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규정에 따라 금지를 추구하고 있다. 동 조문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 내지 일단의 기업이 경쟁업체를 제거하거나 징벌하기 위해, 또는 유망한 신규 경쟁업체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정행위에 종사할 때에 남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작년에 캘거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Canadian Airlines의

인수 및 기업결합을 통해 캐나다의 시장지배적 항공사가 되었다.

경쟁국은 작년 4월 캘거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WestJet의 이의제기가 있은 이후 에어캐나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WestJet은 뉴브룬스윅 주 Moncton에서 온타리오 주 해밀튼까지 운항하는 신규노선을 공표하였을 때, 에어캐나다는 이용가능좌석을 추가하고 토론토에서 Moncton까지의 노선에 대한 WestJet의 운임보다 저렴하거나 이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맞섰다. 해밀튼은 토론토에서 통근거리 내에 있다. 9월 5일, 노바 스코시아 주의 헬리팩스에 소재한 CanJet는 동부 캐나다에서 할인 항공 운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를 후 CanJet은 에어캐나다가 경쟁노선의 운임을 대폭 할인하였다고 경쟁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0월, 경쟁국은 에어캐나다에 대하여 동부 캐나다의 5개 노선에서의 할인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하였다.

2001. 3. 6, The New York Times

이탈리아

독일 연방카르텔청, e.disNord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당히 고가인 전력망이용요금에 관해 남용규제절차를 개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Furstenwalde에 소재한 e.disNord주식회사(e.dis)가 남용적인 고객의 전선망이용요금을 청구하고, 다른 전력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남용규제절차를 개시하였다.

기본적인 혐의는 e.dis사의 요금이 적당치 않으며, 이것이 효과적인 경쟁에 높은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 국내에서 다른 전선망운영업자와의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력구매자협회(VEN)에 의해 공표된 특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전선망이용요금의 비교에 의하면 e.dis사는 평균치와 저압 영역 및 중압영역에 있어서 조사대상이 된 294개의 전선망운영업자 가운데 최고액의 탁송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e.dis사의 요금에 대하여 Oldenburg 소재 전선망운영업자인 EWE주식회사의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정하였다. EWE사는 자가발전을 하지 않는 전력공급사업자로 사업구조 가운데 최고전압 전선망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e.dis사와 비교 가능한 것이다. 저압영역에 있어서

e.dis사 요금의 평균치는 1kilowatt hour당 19.8페나히로서 이에 대응하는 EWE 요금의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며, VEA가 공표한 전선망이용요금의 평균이상을 51% 상회하고 있다. 중압영역에 있어서는 9.63페나히로서 이에 대응하는 EWE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VEA가 공표한 평균치를 54.3% 상회하고 있다. 이 액이 다르다는 것은 연방카르텔청에 따르면 e.dis사에 의한 남용적으로 높은 전선망이용요금의 형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요금의 부적절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e.dis사는 전선망이용의 범위를 넘어 전력의 조달 및 판매에 대하여 제3자 전력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공급업자에 청구된 전선망이용요금이 e.dis사의 가장 편리한 전력공급팩을 하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e.dis사는 2001년 3월 8일까지 반론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에 카르텔청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남용규제절차의 개시에 따라 국가 수준의 심사기준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가격수준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러한 문제도 추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의 비교대상시장도 고려하여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e.disNord주식회사는 독일 최대전력사업자인 Eon콘체른이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전력공급사업자이다.

2001. 2. 8, 연방카르텔청 발표